

#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번호 25

제출년월일 : 1998.10.

제 출 자 : 이경진의원의외6명

## 1. 제안이유

-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을 위하여 '98조직개편시 계제가 폐지됨은 물론 평창군의회사무과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을 개정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하부조직인 의사계를 삭제하고 의사계의 업무분장을 의회사무과로 조정
-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전문위원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별정직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직제규칙상 전문위원 직급을 삭제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나. 관계부처 승인 :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평창군의회사무과규칙 제 호

###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의사계 및 전문위원"을 "전문위원"으로 한다

제3조(의사계)를 제3조(의회사무과)로 하고, 제3조제1항을 삭제하며,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"의사계"를 "의회사무과"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4조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 &lt;생략&gt;</p> <p>제2조(하부조직)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.</u></p> <p>제3조(의사계) ① 의사계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.</p> <p>② 의사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11호. &lt;생략&gt;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</p> <p>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</p>	<p>제1조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제2조(하부조직)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전문위원을 둔다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제3조(의회사무과)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11호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</p>